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7.20 (토)
지역경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 7.20(토)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년 7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 1 차 7월 20일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상정
·제 2 차 7월 20일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심사
·제 3 차 7월 20일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현행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던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충 주차난 해소를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현행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행안 제2조 8호를 신설 삽입하여 세입으로 추가지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문) 세입예산을 현행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확충하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기대되는가?
답) 특별한 성과는 기대하는바 없으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문) 복개천에 불법주차나 적치물을 쌓아 놓은 장소에 공간을 활용 세수확보 대책은?
답) 지금은 수도공사 관계로 곤란하며 91년도 하반기중에 공공단체나 민간에게 직영을 주어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중에 있음.
문) 각동에 폐차가 길거리에 내버려진채 방치되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관리 처분할 용의는?
답) 부천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천시의 견인차가 4대에 불과하여 행정력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폐차정이 협소하여 하루에 1～2대씩 견인하고 있다.
문) 견인차량 방법에서 민영화할 계획이나 대행업소를 지정하여 견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답)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아직 계획은 없다.
문) 부천시의 경우 좁은 공간에 집을 많이 지어 주차시설이 부족한바 신축 건축면적에 대하여 활용도에 따라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여부?
답) 노상·노외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허가 및 주차장관리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 현행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요금 통제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답)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하다.
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뚜렷한 세수증대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여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특별회계 세입으로 지정하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답)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하여 지출하다보면 타용도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회계로 지정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자체를 간소화 한다든가 방법을 개선하여 도로율과, 차량증가율, 주차장설치에 대한 예상등이 장기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개선보완하는등 미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부천시의 경우 도외시한 행정으로 인하여 오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직영으로 주차장 설치운영 하는 것이 몇개소나 되는가?
답)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장소는 1개소로서 경인국도변 현대백화점 앞이며 부천시직장금고에서 사람을 고용 운영중에 있다.
문)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 또는 주차시설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인 의지나 계획은?

답) 부천시의 인력이나 기술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 도시과와 협의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 현행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소형과 대형차를 구분하여 주차할 수 있는가? 또한 복개천변에 버스나 대형트럭등이 세차나 정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치한 사항이 있는가?

답) 현행 주차시설은 소형과 대형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조치한 사항은 아직 없다.

문)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가?

답)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부천시 자체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각시·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위원명	주 요 요 지
강 문 식	우리 부천시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시설이 차량 대수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바 현행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설치하여 예산전액을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만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뿐아니라 세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함.
위 원 회 만장일치	강문식위원에 대한 만장일치로 찬성

나. 반대토론

위원명	주 요 요 지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 음

나. 수정이유

없 음

다. 수정주요골자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7. 소수의 의견요지

부천시는 외형적으로 전국 8대 도시라는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형적으로는 시민의 휴식공간, 체육공원, 도시미관, 주차장시설등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낙후된 시로서 특히 교통을 소통할 수 있는 도로시설,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주·정차 위반에 대처할 수 있는 단속인력·장비 부족으로 인한 행정력 뒷받침이 미흡하여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 지정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있게 예산을 집행 주차난 해소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으면 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부천시 자체의 지침을 마련 대책강구와 장비 및 인력확보 요망
- 부천시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제공

9. 자구체계 심사내용

없 음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7. 22.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7월 19일 부천시 제출

나. 회부일자 : 1991년 7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 1 차 위원회 (1991.7.20.) 상정

제 2 차 위원회 (1991.7.22.)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휴 철도택지를 이용하여 역무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부천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